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84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2023년 3월 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이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2023년 12월 29일)되었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생략) ③ <u>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u>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

13.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 8. (생략) <u><신 설></u> 9. (생략)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생략)	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u>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

13.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